#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 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 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u>
<u>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u>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 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31407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 2023-09-26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25-05-12

# [르마망]

#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드모아젤'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주식회사 드모아젤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70, 812호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TEL : 0507-1366-3427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FAX :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영업부 / TEL : 0507-1366-3427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 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 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 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르마망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70, 812호					
주식회사	법인 설립등기	l일	사업자등록일	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드모아젤	2022.02.04	-	2022.02.04	최은정	0507-1366-3427	-		
	법인등록번호	110	111-8187381	사업자등록번호	192-87-	-02308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서울특별시	│ 강서구 마곡중앙(	6로 70, 812호		
대표이사	최은정	정 르마망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은정	0507-1366-3427	_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서울특별시	│ 강서구 마곡중앙(	6로 70, 812호		
사내이사	박서현	르마망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은정	0507-1366-3427	-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서울특별시	│ 강서구 마곡중앙(	6로 70, 812호		
사내이사	채창훈	르마망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은정	0507-1366-3427	_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르마망]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르마망	_
상 호	르마망 00점	_
로고	LeMaman	_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4년	180,336	252,059	-71,722	663,791	72,777	75,188
2023년	91,058	237,969	-146,911	371,005	52,670	51,688
2022년	75,730	274,330	-198,600	386,918	-218,616	-218,600

(2)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012	뭐 지이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최은정	대표이사	2022.02~ 현재	주식회사 드모아젤 대표이사	사업총괄				
관련	박서현	사내이사	2022.02~ 현재	주식회사 드모아젤 사내이사	영업기획				
관련	채창훈	사내이사	2022.02~ 현재	주식회사 드모아젤 사내이사	관리사무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000414 4081 0401	상근	비상근	0
2024년 12월 31일	3	0	U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최근 3년간 [르마망] 이외의 가맹사업을 운영한 바가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여부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LeMaman	45류	2022.01.27 출원 2023.07.14 공고 2023.10.04 등록	출원 4020220018624 공고 4020230126962 등록 4020903790000	최은정	2033.10.04 (2033.10.04)
LeMaman	35류	2022.01.27. 출원 2023.11.16. 공고 2024.03.20. 등록	출원 4020220018618 공고 4020230197499 등록 4021715120000	최은정	2034.03.20 (2034.03.20)
LeMaman	44류	2022.01.27. 출원 2023.11.16. 공고 2024.03.20. 등록	출원 4020220018620 공고 4020230197500 등록 4021715130000	최은정	2034.03.20 (2034.03.20)

- ▶ 당사는 상표출원에 관한 서류를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상표 출원자로부터 상표권 전용 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관한 서류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두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상기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귀하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책에 따라 상기의 지적재산권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a href="http://www.kipris.or.kr/">http://www.kipris.or.kr/</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Ⅱ. 가맹본부의 [르마망]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23-10-20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2.02.04

# 2. [르마망]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식회사 드모아젤	르아망	최은정	2023.10~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구역회사 <u>-</u> 포마글		의근경	2023.10~면제	마곡중앙6로 70, 812호

# 3. [르마망] 업종

영업표지		업종
> U1 U1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르마망	기타서비스	산전 산후 케어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르마망]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2024년도 말	발	2	2023년도 말	발	2	2022년도 말	발
시작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9	8	1	5	4	1	1	_	1
서울	2	1	1	2	1	1	1	_	1
부산	1	1		1	1	_	ı	_	_
대구	1	1		ı	1	_	ı	_	_
인천	1	1		1	_	_	1	_	_
광주				-	_	_	_	_	_
대전				ı	-	_	1	_	_
울산	1	1		-	_	_	-	_	_
세종				-	_	_	_	_	_
경기	2	2		2	2	_	_	_	_
강원				_	ı	-	-	_	_
충북				_	_	_	_	_	_



충남			_	_	_	_	-	_
전북			_	_	_	_	_	_
전남			_	_	_	_	-	-
경북			_	_	_	_	_	_
경남			_	-	-	-	_	-
제주	1	1	1	1	-	-	-	-

# 5. 바로 전 3년 간 [르마망] 가맹점 수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4	4	4				8
2023	0	4	0	0	0	4
2022	_	_	_	_	_	-

# 6. [르마망]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직전 3년간 해당사업 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2024년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이 5곳 미만이어서 가맹점연평균매출액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2024	4년 가맹경	적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4년 말	매출액(상하)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²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8	139,124	14,906	225,500	33,825	35,890	3,589	_
서울	1							5곳 미만
부산	1							5곳 미만
대구	1							5곳 미만
인천	1							5곳 미만
광주								



대전					
울산	1				5곳 미만
세종					
경기	2				5곳 미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5곳 미만

# 8. [르마망]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르마망]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8	379 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르마망]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구 분	Д. г.	ור ור		지출 비용		
十世	수 단	기 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고
합계	/	2024년	6,566	6,566		_
광고	/	/				_
판촉	/	/				_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가맹금은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 또는 [신한은행 인터 넷뱅킹]으로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 홈페이지 (https://www.shinhan.com/) 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가맹금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 사업자등록번호나 [주식회사 드모아젤]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나 예치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 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귀하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귀하는 예치해야할 가맹금액을 당사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식회사 드모아젤	가맹본부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약체결일 또는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사업 개시일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예치가맹금 범위내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30일소요



#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르마망]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략 아래 표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역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	1.가입비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가맹점 오픈
맹	2.상표사용료	33,000	게이탈리크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이후 반환
H	3.매뉴얼/인력지원 대가		계약체결 후 익일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	안 됨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0 이내		_	_
	합계				

2)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 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5,000	계약 체결 후 익일 이내	미지급, 손해배상, 위약금, 영업표지 등 원상회복의무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 증금으로 잔존 채무, 손해배상 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함.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당사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가맹금을 예치하실 필요가 없으며 보험으로 대체되는 예치가맹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99㎡기준)

구분	금액
가맹비	33,000
계약이행 보증금	5,000(VAT없음)
합계	38,000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사유
초도물류	별첨2 참조	15,950	ı	-입고 3일전	입고 전 계약취소	입고 후
총계						

- \*인테리어 간판 설비 공사 여부 점주 자율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 입지선정의 주체는 가맹희망자입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희망자가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조언을 할 수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집니 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관련 법규에 의한 허가 요건을 충족한 자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킨 사실이 없을 것
종업원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기타 가맹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
		만 19세 이상으로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함

- ※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 다. 또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서 요청하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종업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해당 종업원이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시 사후조치 및 직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르마망]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당사는 가맹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 납부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맹계약에 명시된 대로의 이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사유	비고
총계		-				
로열티	가맹본부	1,100	매월1일	반환안됨	상표사용료 경영지원댓가	소멸성 비용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브랜드광고, 서비스/상품광고시 전체가맹점이 광고비50%를 부담	발생시 공지	반환안됨	광고비용 으로소요	산출근거 서면제시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WI-1참조	-	-	ı	-	-



점포환경 개선비용	WI-1참조	-	_	_	_	_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금의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반환안됨	-	ı
정기교육	가맹본부	실비	교육3일전	반환안됨	교육비용소요	ı
비정기교육	가맹본부	실비	교육3일전	반환안됨	교육비용소요	_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는 2024년도 말 현재 차액가맹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 3)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을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관리, 감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내 용	빈도/시기	담당팀	비고
운영관리	- 운영방법 및 계획 파악을 위한 면담 및 자 료요청 권리	수시	당사의 임직원	
회계관리	- 회계장부(포스) 등 경영전반에 관련된 기 록을 열람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수시	당사의 임직원	
서비스 관리	- S/V 또는 M/V를 통한 매장의 균일한 서비 스 관리	수시	당사의 임직원	_
위생관리	- 위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고객이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	수시	당사의 임직원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가맹비일천일백만원(₩11,000,000)<부가세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귀하와의 쌍방간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며,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의 재계약의 연장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의 갱신시에는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후 조치사항

가맹계약서 제38조 [가맹본부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유지를 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②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그 독점적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하여이를 배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원칙적으로 당사는 모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귀하에게 통지 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양도인)는 최초 가맹계약 시 가맹본부에 지급한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계약의 종료일(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물품대금포함)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상환하지만, 보증금으로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채무액을 당사에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부담이 발생합니다.

가. 잔여 계약기간으로 양수하는 경우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없음	_
교육비	없음	_
계약이행보증금	5,000	부가세없음

#### 나. 신규 계약 기간으로 양수하는 경우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33,000	부가세포함
교육비	없음	-
계약이행보증금	5,000	부가세없음

#### 4)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 5)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본 계약이 해지, 기간만료, 갱신의 거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을"은 아래 각항의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귀하는은 [르마망]으로부터 제공받은 간판 등 제반 영업표지를 즉시 철거하거나 제거하여 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철거 또는 제거의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르마망]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 ③ 귀하는 기타 [르마망]의 상호나 상표 등 [르마망]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르마망]이 이미 제공한 공급물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갑"에게 반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본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귀하는 [르마망]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대금과 기타 귀하가 [르마망]에게 납부할 비용 일체를 현금으로 완제하여야 합니다.
- ⑤ 귀하는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르마망]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 받은 가맹점 운영 규칙, 문서, 도면, 도서 등 관계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⑥ 귀하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르마망]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⑦ 귀하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르마망]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⑧ 귀하가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르마망]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되며, 귀하는 이에 대한 위약벌으로 위반일 1일당 금 일십만원(₩100,000)



<부가세 없음>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르마망]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르마망]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 추가 상품을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산전케어(집중코스/힐링코스)			
산후케어(스페셜코스/베이직코스)	왼쪽에 기재되지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1회 서면	
시그니처케어(풀바디코스/슬리밍코스)	<b>상품 · 용역</b> 및 승인	시정요구 후	가맹사업법의
유산회복케어(큐어코스/밸런싱코스)	받지 않은 <b>상품·용역</b> 은	가맹점운영권 제한	해지 절차 준용
패밀리케어	판매할 수 없음	또는 2회 서면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가슴통곡케어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 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추가적인 제한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소비자 이외의	V-3-1) 에	소비자 이외의 제3자 또는	1회 위반 : 구두경고
제3자 또는 다른	지정된 가맹점	다른 가맹점에게 판매할 수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가맹점	판매 용역	없음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 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 하고 당사와 사 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มฉ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공지	_

※ 권장가격 이외에 event 할인, 프로모션 할인, 쿠폰행사 등 가격할인 행사에 관한 사항은 영업 환경변화에 따라서 당사와 가맹점주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라 어조 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산전 산후 케어를	⊃ 01 01·		
전문으로 하는 업종	르마망 	_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성정반병	
행정구역	영업지역	설정방법
서울특별시/6개광역시	1개 가맹점/1개구	
8개자치도	1개 가맹점/1개시 1개 가맹점/1개군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세종특별자치시	1개 가맹점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1개 가맹점/1개시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 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 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경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 인정되는 경우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 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르마망]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일반소매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 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50	5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기간

[르마망]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갱신시에는 계약이 **2년씩** 연장됩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 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①+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В.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Ε.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장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5조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 은 경우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상품 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승인을 얻지 못한 서비스를 판매하였을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서비스의 판매가격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제36조 1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지정 브랜드 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을 공급받지 않	



고 직접 구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규정 위반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3회 이상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에 의한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매장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타업체와의 담합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경우

#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6조 2항 각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001 20 1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6조 3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 치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36조 4항 각호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 라.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가.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 나.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인한 본 계약서 수정이 불 가피 할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해당 조문에 대해 특약사항으 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하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라.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서면요청이 있은 후 본사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유무를 통지하게 되며, 거절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승인을 한 경우 대상자는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당사가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양도절차를 이행해야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신규가맹계약 조건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금 등 부담비용)을 당 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 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 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 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 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법적효력 발생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 청→승인여부통지→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행사	당사 승인 시 가능	ı	-	ı
업무위탁	당사 승인 시 가능	_	_	_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받되, 가맹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점 전 최초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대리인, 수탁인 또한 같습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 ① 귀하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는 국내에서 당사의 의 승낙 없이 자신(민법상 가족을 포함한다)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을 하지 아니 합니다.
- ② 귀하는 본 계약의 종료 후 3년간 국내에서 당사의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มอ
산전 산후 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해당 없음	문의 : 당사
[르마망]과 동일업종	M S W H	(TEL 0507-1366-3427)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르마망"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협의	매월 26일 이상, 주6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 ※ 귀하께서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 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시기	담당팀
매장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사업본부
서비스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1외/군기	사립군구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광고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ㅂ 까그성경		부담비율		브다저키	шП
구분	광고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비고
	브랜드광고	E00/	50%	산출의 근거를	
전국광고	서비스/상품광고	50%	(전체가맹점)	서면을 통해 제시	전국광고 (온오프라인)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 없음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가맹사업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독자적 광고·판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당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 면 됩니다. 다만, 판촉 활동을 위한 판촉물 제작시 [르마망]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10.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판촉,홍보 매뉴얼 그밖에 영업활동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1) 귀하는 당사가 대여하는 가맹점 운영 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상 중요 정보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의 허가 없이 영업상 중요 정보 등에 대한 인쇄, 복사, 대여, 공개나 기타 영업상 중요 정보 등과 관련된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당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고객정보를 고객과의 계약내용 또는 법령의 허용범위



- 이외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 2) 귀하는 민법상 가족, 자신의 피고용인, 기타 업무에 관련된 자 등에 의한 전항의 누설행위에 대하여 당해 행위자와 함께 공동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3) 전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유지됩니다.
- 4) 귀하가 전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당사의 가맹사업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1.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르마망]에게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귀하가 계약의 해지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 하거나 [르마망]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르마망] 에게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귀하가 제 43조에 규정된 영업비밀유지 의무, 제 44조에 규정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르마망]에게 위약벌로 일금 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귀하가 계약의 종료 후 [르마망]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은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금삼십만원 (₩300,000원)씩 [르마망]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6) [르마망]은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르마망]은 귀하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7) 귀하는 [르마망]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르마망]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분 내용		소요비용
합계	-	45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_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43	_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_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0	_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7	_
가맹금 예치	- 가맹금 당사 입금(당사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기 에 가맹금예치의무가 없습니다)	D-26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5	_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3~5	_
교육 실시	- 개점전 교육 실시	D-30~1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_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시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 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 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르마망]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르마망]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훈련종류	주요내용	교육생	교육방식	기한	비고
	-산전 산후 케어 교육 -홍보마케팅 -매장운영 교육	가맹점사업자 / 관리자	이론/실습 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하기 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필수교육
개점후 교육	새로운 서비스 교육 신설시(비정기)	가맹점사업자 / 관리자	이론/실습 교육	교육실시 30일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 2. 교육,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르마망]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전 교육	30일	0	_
개점후 교육	1일	실비	_

# 3. 교육,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계약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말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본점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797-9 812호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도말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มอ		
2년 11개월	-		

##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663,791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직영점과 관련된 매출액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 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 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 1.















# 별첨2 필수품목



# 별첨3 직전사업연도 공급가격



# 가맹금 예치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상호(영업표지) 가맹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워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일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가맹본부	브랜드명	

## ■ 가맹계약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공확인	본인은 가맹계약서를			서득	제공받았습	니다.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공확인	본인은 정보공개서를 7				데공받았습니	다.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 ■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 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정보를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 망자에게 제공합니다.

##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

No.	<b>상호</b> (가맹점명)	<b>소재지</b> (주소)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가맹희망자는 수령일로 부터 1개월 후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령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에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맹본부	대표이사:	(인)	
	성명:	(인)	
가맹희망자	주소:		
	전화번호:		